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3366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6.17.]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학교보건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131호, 2013.12.30.,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안전과) 044-203-6547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2008.3.21.>

##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안전과) 044-203-6547

교육부(학생건강안전과) 044-203-6541

### 제2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치 등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8.13.>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지역공동체과) 02-2100-3818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 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4.1.14.>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전문개정 2011.5.30.]

**부칙**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⑫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